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9,753,014	8,392,590
일반회계	239,163,586	7,174,908
특별회계	40,589,428	1,217,683
기타특별회계	40,589,428	1,217,68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703,428	141,103
수질개선특별회계	23,032,166	690,965
의료보호특별회계	363,844	10,915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6,696,609	200,898
장수한우거점시설특별회계	2,793,381	83,801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3,000,000	90,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변동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963,827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